

소송위임장 (소액사건)					
사건번호 20 가소	(담당재판부 : 제 단독)				
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	리를 위임합니다.				
1. 소송대리 위임  가. 소송대리할 사람의 이 름  주 소  연락처 ( ) - [팩스번호:( ) - 나. 당사자와의 관계(해당란에 ✔ 해 주 □ 배우자 □ 직계혈족(부모, 자 등) □ 형제자매 [신분관계 증빙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>					
2. 소송위임할 사항 가. 일체의 소송행위, 반소의 제기 및 응소 나.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화해 다. 소의 취하 라. 청구의 포기・인낙 또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소송탈퇴 마.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바. 복대리인의 선임 사. 목적물의 수령, 공탁물의 납부,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아. 담보권행사, 권리행사최고신청, 담보취소신청, 담보취소신청에 대한 동의, 담보취소 결정정본의 수령,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포기 자. 기타(특정사항 기재요)					
20 .					
위 위임인 : 원(피)고	(날인 또는 서명)				
	법원 귀중				

제출법원	소송계속법원	관련법규	소액사건심판법	제8조 제8조	
제출부수	소송위임장 1부				
기 타	· 소액사건에서만은, 당사자의 배우자·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음. · 당사자와의 신분관계는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므로,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 등을 첨부하여야 함 ·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와 달리 소송대리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				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당사자 >> 소송대리